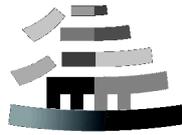


호 외 / 2011년 4월 22일

선 람	기 관 의 장



# 익산시 시보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발행자 : 익산시청  
발행처 : 홍보담당관

## 【 입법예고 】

- 익산시 공고 제2011-716호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... 1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익산시 공고 제 2011-716 호

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4월 22일

## 익 산 시 장

### 1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가축사육시설의 증가로 인한 악취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보전을 기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개정내용

- 가. 가축사육 제한지역중 일부제한지역 거리제한 변경함. (안 제2조)
- 나.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「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함. (안 제3조)

### 3. 의견 제출

가.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05월1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(참조 : 환경위생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570 - 751 익산시 인북로32길1(남중동) 익산시 환경위생과(전화 859-5499, FAX859-5083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,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.

### 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환경위생과 가축사육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에게 전화(☎859-549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및 시행규칙 제8조의2”를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”로 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]

##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(제2조제2항 관련)

구분	전부제한지역	일부제한지역
제한내용	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공원구역, 공원보호구역, 상수원보호구역	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- 소·젓소·말·사슴·양·닭·오리·돼지·개의 경우 : 500미터 이내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<p>제3조(정의)①본 조례에서 가축이라 함은 <u>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11호 및 시행규칙 제8조의2 사육동물을 말한다.</u> 다만, <u>관상·애완용 조수류</u>는 예외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[별표]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(제2조제2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전부제한지역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일부제한지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제한내용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(생략)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                    -<u>소·젓소·말</u>의 경우 :  <u>100미터 이내</u>                      -<u>사슴·양·개</u>의 경우 :  <u>200미터 이내</u>                      -<u>닭·오리·돼지</u>의 경우 :  <u>300미터 이내</u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전부제한지역	일부제한지역	제한내용	(생략)	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- <u>소·젓소·말</u> 의 경우 : <u>100미터 이내</u> - <u>사슴·양·개</u> 의 경우 : <u>200미터 이내</u> - <u>닭·오리·돼지</u> 의 경우 : <u>300미터 이내</u>	<p>제3조(정의)①본 조례에서 가축이라 함은 「<u>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</u>」 제2조제1호의 사육동물을 말한다. 다만, <u>관상·애완용 조수류</u>는 예외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]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(제2조제2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전부제한지역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일부제한지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제한내용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(현행과 같음)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-<u>소·젓소·말·사슴·양·닭·오리·돼지·개</u>의 경우 :  <u>500미터 이내</u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전부제한지역	일부제한지역	제한내용	(현행과 같음)	- <u>소·젓소·말·사슴·양·닭·오리·돼지·개</u> 의 경우 : <u>500미터 이내</u>
구분	전부제한지역	일부제한지역											
제한내용	(생략)	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- <u>소·젓소·말</u> 의 경우 : <u>100미터 이내</u> - <u>사슴·양·개</u> 의 경우 : <u>200미터 이내</u> - <u>닭·오리·돼지</u> 의 경우 : <u>300미터 이내</u>											
구분	전부제한지역	일부제한지역											
제한내용	(현행과 같음)	- <u>소·젓소·말·사슴·양·닭·오리·돼지·개</u> 의 경우 : <u>500미터 이내</u>											